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고 제2026-4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제안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조례안 참조

2. 의견제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우)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의회사무국

· 문의처: 전화 02-3153-6185, FAX 02-3153-6999

전자우편 july@mapo.go.kr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월 2,655,700원”을 “월 3,051,05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2024년부터 2026년까지”를 “2028년부터 2030년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① (생 략)	제3조(월정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월정수당은 월 2,655,700원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날 수대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 월 3,051,050원 ---------. ---------- ---------- -------.
③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2028년부터 2030년까지 ----------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3조제2항의 월정수당 인상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
(월정수당: 월 2,851,450원 → 월 3,051,050원)

○ 제3조제3항의 월정수당 적용기간 변경(2028년부터 2030년까지)

2. 비용추계의 전제

○ 현행 월정수당은 1인당 월 2,851,450원임

○ 개정 후 월정수당은 1인당 월 3,051,050원으로 산정

○ 마포구의회 의원 정원 19명, 연간 지급 개월 수 12개월로 산정

○ 2028년~2030년 월정수당은 최근 3년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로 가정하여 적용

3. 비용추계의 결과

○ 추가 소요액

(단위: 천 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인상률		7%	3%	3%	3%
1인 월정수당	2,851	3,051	3,143	3,237	3,334
연간 지급액(19명)	650,131	695,639	716,509	738,004	760,144
전년 대비 증가액	-	45,509	20,869	21,495	22,140
2026년 대비 증가액	-	45,509	66,378	87,873	110,013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회사무국 의회행정팀 이은경
연 락 처	02-3153-6164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